우정사업본부 KOREA POST

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도 우정9급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

1. 신청 대상

○ 2022년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**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**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
- **시각·지체·뇌병변**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

○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

2. 신청 절차

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계획 확인	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계획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, 본인의 해당 여부, 지원요건,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
⇩	
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	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화면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기재
⇩	
구비서류 제출	본인이 신청하는 편의신청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원본 일체를 관할 지방우정청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○ **제출기한: 2022. 4. 5.(화) ~ 4. 7.(목)** **※ 제출 마감일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유효** **[서류 제출처] : 관할지역별 해당 지방우정청(붙임)으로 송부** **※ 하지지체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팩스로 송부 가능**

3. 편의지원 관련 유의사항

1. **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반드시 숙지**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해당 여부,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(정도)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, 장애인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**의사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**)

2.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**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 병원)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(2020. 4. 7. 이후 발급)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**하게 인정됩니다.

※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.

※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→ [병원·약국 찾기]를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
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하며 전문의 면허번호,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야 함)

3. 의사진단서에는 **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,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**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.

※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에 예시된 각 **장애유형별 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해당 사항(밑줄 참조)을 누락됨 없이 진단서에 확인** 받으시기 바라며,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**의사진단서에 따른 편의를 제공**합니다.

4. **장애인 응시자**는 별도의 편의제공 신청 없이 **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**합니다.

5. 의문사항 발생 시 **반드시 사전에 붙임의 해당 서류 제출처로 문의하신 후 처리**하시기 바랍니다.

4.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안내 등

▣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미만인 자

구비서류	≪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진단서 원본≫ 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▣ **의사진단서**: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지원 신청의 경우만 제출(**소견서 불인정**) ※ **제출기한**: 2022. 4. 7.(목) **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 ※ **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** ① 두 눈의 교정시력(좌, 우 각각 명시)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)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0.1, 우0.2에 해당하는 자로서, 시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(A4 크기)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	▶ **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** ▶ **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** ▶ **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* ▶ **시험시간 연장(1.2배): 60분 → 72분**

▣ 시각장애인 중 기타 시각장애인

구비서류	≪장애인증명서 사본≫ 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※ **제출기한**: 2022. 4. 7.(목) **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	▶ **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** ▶ **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** ▶ **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*

▣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舊 1~3급) · 상이등급(1~3급)

구비서류	≪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진단서 원본≫ 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▣ **의사진단서**: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지원 신청의 경우만 제출(소견서 불인정) ※ **제출기한**: 2022. 4. 7.(목) **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 ※ **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** ① 뇌병변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 *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재 *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장애등록 시 지체장애로 기재된 자 동일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)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한 자(구 O급)로서 손, 목,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, 특히 문제풀이 및 답안 작성과 관련해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 능력이 현저히 손상되어 필기 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	▶ **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** ▶ **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** ▶ **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* ▶ **별도시험실 배정(좌석 간격 조정)** ▶ **시험시간 연장(1.2배): 60분 → 72분** ▶ **대필지원** ▶ **휠체어 전용(높낮이 조절) 책상 제공**

▣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舊 4~6급) · 상이등급(4~7급)

구비서류	≪장애인증명서 사본≫ 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※ **제출기한**: 2022. 4. 7.(목) **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	▶ **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** ▶ **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** ▶ **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*

▣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舊 1~3급) · 상이등급(1~3급)

구비서류	≪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진단서 원본≫ 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▣ **의사진단서**: 시험시간 연장 신청의 경우만 제출(**소견서 불인정**) ※ **제출기한**: 2022. 4. 7.(목) **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 ※ **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** ① 상지 지체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 *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재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) 상기인은 지체장애 정도가 심한 자(구 O급)로서 필기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어 필기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, 특히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	▶ 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 ▶ 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 ▶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▶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 간격 조정) ▶ 시험시간 연장(1.2배): 60분 → 72분 ▶ 대필지원 ▶ 휠체어 전용(높낮이 조절) 책상 제공

▣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舊 4~6급) · 상이등급(4~7급)

구비서류	≪장애인증명서 사본≫ 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※ **제출기한**: 2022. 4. 7.(목) **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	▶ 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 ▶ 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 ▶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

▣ 거동 또는 응시에 불편함이 있는 하지 지체장애인, 임신부 등

지원요건	거동 또는 응시에 불편함이 있는 하지 지체장애인, 임신부
구비서류	≪장애인증명서 사본≫ ▣ 장애인증명서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※ 제출기한: 2022. 4. 7.(목)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≪임신부・과민성 대장(방광) 증후군≫ ▣ 의사 소견서 1부 ※ 제출기한: 2022. 4. 7.(목)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※ 의사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ex) 상기인은 임신( )주, 필기시험 예정일(2022. 5. 14.)을 전・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,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	▶ 하지 지체장애인: 별도(저층)시험장(실) 배정 (좌석간격 조정) ▶ 임신부・과민성 대장(방광)증후군 :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,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▶ 휠체어 전용(높낮이 조절) 책상 제공

【응시지역별 관할 지방우정청 주소 및 연락처】

지 역	우정청명	주소	전화/팩스
서 울	**서울지방우정청**	서울시 종로구 종로6 (서린동 154-1) 서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㉾ 03187	02)6967-9141 0505-005-1110
부산・울산・경남	**부산지방우정청**	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(거제동 1473) 부산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㉾ 47502	051)559-3236 0505-005-1457
대전・세종・충북・충남	**충청지방우정청**	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(둔산동 1408) 충청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㉾ 35239	042)611-1278 0505-005-1657
대구・경북	**경북지방우정청**	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(입석동 982-3) 경북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㉾ 41142	053)940-1565 0505-005-1957
전 북	**전북지방우정청**	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(효자동2가 1245-4) 전북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㉾ 54966	063)240-3737 0505-005-2107